

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0월 1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심사절차를 폐지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도모
- 나. 택시 부제 위반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조함.

2. 주요내용

가. 택시 부제와 외국인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심사절차를 폐지하고,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택시 부제 위반행위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추가함(안 제3조제1항)

다. 신고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안 제4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”을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"택시 부제"란 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 형태

7. "외국인"이란 「국적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루어지게 한 사람 중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”을 “이루어지게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26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택시 부제 위반행위

7. 외국인을 대상으로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

제3조제2항 중 “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”를 “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

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 내에”를 “시 관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.

별표 1의 5. 택시 승차거부 행위란 다음에 6. 택시 부제 위반행위란 및 7.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택시 부제 위반 행위	50,000	
7.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	50,000	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<신설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"택시 부제"란 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
<신설>	7. "외국인"이란 「국적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	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

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 중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·개인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

<신설>

<신설>

②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5일 이내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야 한다.

③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의

이루어지게 한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1호

6.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택시 부제 위반행위

7. 외국인을 대상으로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

② -----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-----.

<삭제>

제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-----

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포상
금을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
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신고인이 인천광역시(이하 "
시"라 한다.) 내에 거주(주민
등록상)하지 않는 경우

5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
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
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시 관내에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
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
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온누리
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
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
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